



Tax and Regulatory

Doing Business in Myanmar

KPMG in Myanmar
home.kpmg/mm/korea

Tax and Regulatory

법인의 형태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Act; MCA)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mpany limited by shares (회사의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미얀마에서 설립되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 비공개 주식회사와 공개 주식회사로 나뉨)
-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회사의 주주들이 납입하기로 한 자본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되, 회사를 해산할 때에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는 형태의 회사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사용되는 회사 형태)
-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 합작회사
- 협회
- 특수법인 (미얀마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1950)에 따라 설립된 회사)

미얀마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인은 민간 기업 (Company limited by shares) 과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입니다. 외국 투자자의 경우,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사업운동을 일반적으로 선호합니다.

특정 사업은 관련 부처의 인허가 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소유제한

외국인 지분비율이 35%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계기업으로 간주 됩니다. 다음 네 가지 항목의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국적자만 수행할 수 있는 투자사업
-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
- 내국인 또는 내국인 소유회사와 합작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사업 (내국인 최소 지분율 20% 충족)
-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되는 투자사업

미얀마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경우, 100% 외국인기업은 도매 및 유통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인센티브

미얀마 투자법(MIL)은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승인을 받은 특정 사업(전략적 사업, 대자본 사업 등) 또는 권장 사업 활동에 대해 외국인과 미얀마 투자자들에게 세금 혜택 및 세금 외 기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법인소득세 면제, 관세 면제,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권리 등이 있습니다.

기타 혜택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장기 임대, 직원 및 근로자 임명권, 자금 이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특별경제구역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s Law)에 의해 특별경제구역에 해당되는 투자자 및 개발자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환 거래

미얀마 내 법인은 외화대출을 하기에 앞서 미얀마 중앙은행(CB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수수료, 이자, 배당금, 이익금 또는 로열티 등의 국외 송금은 미얀마 내 인가된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최장 1년 단위의 임대 계약으로 최대 50년, 추가로 10년씩 2차례 연장해 토지 또는 건물을 장기 임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현재 미얀마의 일일 최저 임금은 4,800차트(MMK)이며, 10인 이하의 사업장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소상공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비자 또는 체류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미얀마의 기업은 미얀마 회계기준서(Myanmar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FRS)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공인된 회계사로부터 감사 받아야 하며, 영문 또는 미얀마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 30명 이하, 직전 사업연도 기준 매출 5천만차트(MMK) 미만인 경우, 소규모회사로 분류하고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ax	
법인소득세	표준 법인소득세율은 25%입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8년에 회계연도 변경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매년 4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 이던 회계연도가 '매년 10월 1일~다음해 9월 30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의 경우, 2019년 3월 31일 회계연도가 계속 적용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0%입니다.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 회사의 경우 예외) 부가세 환급은 금액으로 받거나 다음달 부가세 납부용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세 (Commercial Tax)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상업세율은 일반적으로 5%입니다.
원천징수	이자, 로열티, 용역비 등 특정 소득을 국내 또는 국외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해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	인지세는 미얀마 인지세법(Myanmar Stamp Act)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이전가격	미얀마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법상의 규정은 없습니다.

Contact us

Korea Desk



토마스 찬 (Thomas Chan)

Partner, Tax
KPMG in Myanmar
E : tchan8@kpmg.com
T : +95 1 860 3361 to 63



배효경

Manager, Advisory
T : +662 677 2000 x 4021
E : hbae@kpmg.co.th

KPMG Advisory (Myanmar) Ltd.

T : +95 1 860 3361 to 63
E : myanmar@kpmg.com



STAY CONNECTED



Twitter: @KPMG-MM

Facebook: facebook.com/KPMGinMyanmar

home.kpmg/mm

© 2019 KPMG Advisory (Myanmar) Limited, a Myanmar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Myanma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up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